

# 아동보호와 청소년보호가 달라야 할 이유가 있는가?

**정선욱** | 한국아동복지학회장  
덕성여대 사회복지학 교수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2조는 차별 금지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항은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이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고 보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아동복지법」 제2조 1항에서도 “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 유무, 출생 지역,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자라나야 한다.”라고 규정하였다. 「청소년기본법」 제5조 2항에서도 “청소년은 인종·종교·성별·나이·학력·신체 조건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한다.”라고 하였다. 이처럼 차별 없는 권리 보장은 국가의 책무이기에 국가의 제도가 차별을 없애는 방향으로 설계, 실행되어야 함은 당연한 이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대를 비롯해 여러 이유로 가정 내에서 권리를 존중, 보장받지 못하는 아

동·청소년에 대한 국가의 보호, 즉 사회적 보호를 규정한 공공보호체계는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소관 부처에 따라 분절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심하게 표현할 경우 보건복지부는 아동,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식으로 구분되어 아동, 청소년의 삶에 중대한 차별을 낳고 있다.

보호가 필요한 아동과 청소년을 구분하는 이유는 도대체 어디에 근원하는 것일까? 현실적으로 달리 운영되는 아동보호제도, 청소년보호제도는 관련 법에 근거하기에 법을 비교해 보았다.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지원의 법적 근거가 되는 아동복지법,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 지원의 법적 근거가 되는 「청소년복지지원법」을 살펴 보았다(표 1). 데칼코마니를 여기서 보게 되다니 놀라운 일이다. 아동복지법과 청소년복지지원법에서 ‘아동복지’, ‘청소년복지’를 정의할 때, 보호

가 필요한 자를 기술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똑같다. 굳이 다른 점을 찾자면, 아동복지법에서는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을 “보호대상아동”이라고 부르고 청소년복지지원법에서는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청소년을 “가정 밖 청소년”이라고 부르는 정도이다. 그런데 이 또한 ‘제1차 아동정책 기본계획’에서 사회적 보호·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가정 밖 보호아동’으로 기술(관계부처합동, 2015)한 바 있어, 차이라고 할 수 없다.

〈표 1〉에서 보듯 보호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정의, 보호 목적에 대한 정의가 같고, 연령 구분에서만 차이가 있다. 물론 연령의 다름을 고려하는 것은 필요하다. 연령에 따른 차별적인 지원은 연령 맞춤형으로 더 잘 돕기 위한 것이지, 특정 연령을 지원에서 배제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그런데 더 잘 돕기 위한 것이 아님은 여러 곳에서 발견된다. 일례로 양육 상황 점검에서의 차별이 있다. 양육 상황 점검은 지방자치단체의 보호조치 이후 보호대상자가 보호 목적에 따라 잘 생활

하고 있는지,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피는 것이다. 보호가 필요한 A라는 사람이 아동복지법상의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되는 경우 양육 상황 점검이 일정 주기에 따라 이루어진다. 그러나 A를 청소년시설로 보호조치할 경우 A는 청소년 담당 부서로 사례이관된 후 종결 처리 되므로 양육 상황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보호조치를 받은 ‘사람’이 잘 살고 있는지를 살피는 데 아동, 청소년 간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된다.

청소년복지지원법을 조금 더 들여다보려고 한다. 〈표 1〉의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더 이상 ‘가출’ 청소년은 없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가정 밖 청소년 지원 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가출’이라는 행위보다는 ‘가정 밖’이라는 상황에 초점을 두고 지원 및 보호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국가인권위원회, 2017). 이러한 권고가 드디어 2021년 3월 23일 청소년복지지원법 개정을 통해 수용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가출을 일탈

표 1. 아동복지법과 청소년복지지원법 비교

아동복지법	청소년복지지원법
18세 미만인 사람	9세 이상~24세 이하
“아동복지”란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경제적·사회적·정서적 지원을 말한다.	“청소년복지”란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사회적·경제적 지원을 말한다.
“보호대상아동”이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한다.	“가정 밖 청소년”이란 가정 내 갈등·학대·폭력·방임, 가정해체, 가출 등의 사유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청소년으로서 사회적 보호 및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말한다.

자료: 아동복지법, 청소년복지지원법

이나 예비 범죄, 문제 행동으로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가정에서의 학대, 가족 내 갈등, 빈곤 등에 대한 청소년 스스로의 생존을 위한 대응임을 인정하는 것이다. 또한 법 개정은 가정 밖 청소년을 사회적 보호·지원을 ‘받을 만한’ 대상으로 국가가 인정한 것이다. 이제 국가가 법 개정을 통해 보호·지원을 ‘받을 만한’ 대상이라고 자격(?)을 인정했으니, 가정 밖 청소년이 당연한 권리로 국가로부터 ‘받아야 하는’ 것에 차별을 둘 이유는 더더욱 없다.

다시 관련 법으로 돌아와서, 보호가 필요한 아동,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에 관한 법은 모두 보호가 필요한 아동, 청소년에 대해 “보호자로부터의 이탈”이라는 공통 상황에 주목하여 규정하였다. 차이는 법이 분리되어 있고 분리된 법에서 연령을 구분하고 있는 것뿐이다.

그렇다면, 분리된 법을 합치면 어떨까?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해법이다. 아동·청소년복지지원법(가칭)이 보호에서의 차별을 없애는 하나의 해법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아동과 청소년 관련 법의 통합에 대한 논의는 전혀 새로운 발상이 아니다. 2008년 12월 12일, 정부가 아동·청소년기본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기 때문이다. 법학적 또는 법 규범적 차원에서 아동·청소년 분야의 통합 또는 통합 불가 논의가 모두 가능하며 어떤 입법 모델로 갈 것인가는 합리성의 기준으로 선택할 문제라는 지적에 따르면(황승흠, 2010), 합리성 기준에 따라 통합이 합리적인가 혹은 분

리가 합리적인가를 판단할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과연 아동과 청소년 분야의 정책이 분명히 다른 정책으로 명백히 인식될 정도로 별도의 정책 기본 방향을 규정할 수 있을 것인가(황승흠, 2010)이다.

다시 질문하는데, 별도의 정책 기본 방향을 정해야 할 정도로 아동보호와 청소년보호가 명백히 다른 것인가? 앞에서 이미 보호정책의 기본 방향을 정한 아동복지법상의 아동복지와 청소년복지 지원법상의 청소년복지가 다르지 않음을 확인했다.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상황에 놓인 ‘아동’, ‘청소년’을 돕는다는 것도 같다. 이번 정부의 국정과제 53번에서도 가족 중심의 아동·청소년 업무 통합을 강조하였다. 2019년 발표한 「포용국가 아동정책」에서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공적 책임 강화를, 2020년 발표한 「포용국가 청소년정책 방향」에서 지자체 내 위기 청소년 지원 전담 기구(청소년안전망팀)의 설치 확대를 통한 공적 책임의 지속적 담보를 발표한 것도 닮았다. 특히 2019년 발표한 「포용국가 아동정책」에서는 “부모가 가장 먼저 상담받는 곳이 어디인지에 따라 아동의 삶이 결정”되는 것을 문제로 인식하여, 지자체 중심의 아동 최선의 이익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문제 인식은 현재 “아동, 청소년이 가장 먼저 상담받는 곳이 어디인지에 따라 아동, 청소년의 삶이 결정되는 차별적 상황”에 대한 아동·청소년 보호 현장의 목소리와 일치한다. 지면이 부족할 정도로, 어디를 봐도 국가의 보호가 필

요한 아동, 청소년을 달리 볼 이유가 하나도 없다.

포용국가 사회정책은 국가의 책임을 강조한다. 이제 국가가 우선적으로 책임질 것은 분절적인 아동보호, 청소년보호를 아동, 청소년 최상의 이익에 따라 통합하는 일이다. 이에 아동·청소년 복지지원법(가칭) 제정을 제안한다. 한편, ‘제2차 아동정책 기본계획’에서 2022년까지 「아동기본법」을 제정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청소년 기본법에 이은 별도의 법 제정을 통해 아동과 청소년으로 분절된 또 하나의 데칼코마니를 만들지 않기를, 아동·청소년 최상의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이참에 아동청소년기본법(가칭) 제정 작업을 시작하기를 희망한다.

---

## 참고문헌

- 관계부처 합동. (2015). 제1차 아동정책 기본계획.  
 관계부처 합동. (2019). 포용국가 아동정책.  
 관계부처 합동. (2020). 포용국가 청소년정책 방향.  
 국가인권위원회. (2017). 가정 밖 청소년 인권보호 정책개선 권고.  
 아동복지법. 법률 제17784호. 2020.12.29.  
 일부 개정.  
 청소년복지지원법. 법률 제15988호.  
 2018.12.18. 일부 개정.  
 황승흠. (2010). 기본법체계에 대한 법학적 이해: 아동청소년분야 통합분리 논의를 중심으로. 공법학 연구, 11(1), 243-270.